

# 충청북도청주홍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심 사 보 고 서

내 무 위 원 회  
1993. 11. 10.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희부일자

. 제출일자 : 1993년 11월 3일

. 희부일자 : 1993년 11월 3일

다. 상정일자 : 제 96 회 임시회

. 제 1 차 내무위원회 (1993. 11. 10.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조영창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홍덕사지관리사무소가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정비

나. 주요골자

- 홍덕사지가 고인쇄박물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용어의 정비  
( 청주홍덕사지 → 고인쇄박물관 )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 전문위원 윤 태 무 )

충청북도 청주홍덕사지 관람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충청북도 청주홍덕사지 관람료징수조례명 중 "홍덕사지"를 "고인쇄박물관"으로 하고

조례조문중 "문화재보호법 제39조"를 "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"로 하며

"홍덕사지"를 "고인쇄박물관"으로, "홍덕사지사무소"를 "청주고인쇄박물관"으로 하는등

충청북도 홍덕사지관리사무소가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기관명칭이 변경('93. 6)됨에 따라 정비대상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 론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도 원안대로 의결(참석7인, 찬성7인)

7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. 충청북도 청주홍덕사지 관람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
- . 신.구 조문 대비표